

약관 변경 안내

항상 대원저축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축은행 약관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현 행	개 정 안	비고
<p>제1조(목적)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 합니다.</p>	<p>경어체로 변경</p>
<p>제2조(용어의 정의)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상호저축은행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 	<p>제2조(용어의 정의)①-----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 ----- -말합니다. 2. ----- ----- ----- ----- -----말합니다. 3. ----- ----- ----- ----- -----말합니다. 4. ----- ----- ----- ----- -----말합니다. 5. ----- ----- ----- ----- 	<p>경어체로 변경</p>

<p>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상호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p>	<p>----- ----- ----- 말한다.</p>	<p>11→13</p>
<p>12.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p>	<p>12. ----- ----- ----- 말한다.</p>	<p>경어체로 변경</p>
<p>12의2. "자연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거래지시된 때로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요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p>	<p>15. ----- ----- ----- 말한다.</p>	<p>경어체로 변경 12의2→15</p>
<p>13. "계좌송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현금 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p>	<p>10. ----- ----- ----- 말한다.</p>	<p>경어체로 변경 13→10</p>
<p>14.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라 함은 추심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p>	<p>14. ----- ----- ----- 말한다.</p>	<p>경어체로 변경</p>
<p>15.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상호저축은행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p>	<p>16. ----- ----- ----- 말한다.</p>	<p>경어체로 변경 15→16</p>
<p>16."단말기 지정 및 이용"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의 IP, MAC주소 등 기기정보를 상호저축은행에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p>	<p>17. ----- -----전자금융거래시 계좌이체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이하 "단말기"라 합니다)----- ----- ----- 말한다.</p>	<p>공인 인증서 필수 사용의무 폐지 16→17 경어체로 변경</p>
<p>17."추가적인 보안조치"라 함은 이용자가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제6호의 접근매체 이외의 휴대폰문자 또는 2채널(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통신경로를 이용) 등의 수단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p>	<p>18. ----- ----- ----- ----- ----- ----- ----- 말한다.</p>	<p>경어체로 변경 17→18</p>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사항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추심이체(예약에 의한 추심이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좌송금과 관련한 조회, 입·출금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 ~ 3. (생 략)

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

5. (생 략)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상호저축은행과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3. (생 략)

4. (생 략)

② (생 략)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상호저축은행이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

② -----

----- 따릅니다.

제3조(적용되는 거래)-----

----- 계좌이체(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지연이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적용됩니다.

1. ~ 3. (현행과 동일)

< 삭 제 >

4. (현행과 동일)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

----- 합니다. -----

----- 아니합니다.

1. (현행과 동일)

< 삭 제 >

2. (현행과 동일)

3. (현 행)

② (현행과 동일)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

----- 발급합니다.

② -----

경어체로
변경

지연이체
포함

직불카드
단말기가
1호의
지급용단말기에
해당하여
중복되므로
삭제

5호→4호
이동

경어체로
변경

계약체결사
유해당
3호→2호
4호→3호
4호→삭제

경어체로
변경

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다.

1. ~ 2. (생략)

③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 사용위임 또는 양도·담보 제공하거나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7조(공인인증서 사용) ①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1.본인 계좌에 대한 조회업무
- 2.자동응답서비스,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등과 같이 공인인증서의 설치·운용이 불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경우
- 3.등록금, 원서접수비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 4.전자상거래에서 지급결제로써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 또는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이체
- 5.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

-----있습니다.

1. ~ 2. (현행과 동일)

③ -----

-----합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1.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2.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3.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지하는 행위

제7조(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

-----상호저축은행이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이용자의 접근매체 관리책임 구체화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폐지

인상에서 사용하는 경우
6.기타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

②이용자가 계좌이체를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경우 지정된 단말기 또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여 한다.

제8조(이용시간)

- ①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 ②이용시간은 상호저축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수료) ① 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②수수료는 상호저축은행의 수수료율 계산 방법에 따르며, 상호저축은행이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영업점에 게시하거나 기타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일 1주일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

제10조(이체 한도)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지정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삭 제 >

< 삭 제 >

< 삭 제 >

제8조(이용시간)

- ① -----

----- 있습니다.
- ② -----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게시합니다. -----합니다.

제9조(수수료) ①-----

-----따릅니다.

②상호저축은행은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29조를 준용합니다.

제10조(이체 한도)-----

----- 합니다.

경어체로 변경

이용시간 변경시 1개 월 간 변경사항 안내명시

경어체로 변경

표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개정사항 반영

경어체로 변경

제11조(거래의 성립) 이용자가 전자금융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한다.

1. (생 략)
2. (생 략)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 이 이용자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 용 및 입금자금을 모두 확인한 때
4. (생 략)

제12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 ①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 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 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 ②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상호 저축은행이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 시 전자문서가 동일한 내용으로 반 복 수신된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전 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 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 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 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
- ④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거래지시 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 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인출한 다.
- ⑤ 대량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 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 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 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지시를 처리 한다.
- ⑥ 타행계좌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한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 한다.
- ⑦ 지연이체,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

제11조(거래의 성립)-----

-----합니다.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

-----확인-----
4. (현행과 동일)

제12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 ①-----

정보 또는 단말기정보를-----

-----합니다.
- ② -----

-----됩니다.
- ③ -----

-----있습니다.
- ④ -----

-----인출합니다.
- ⑤ -----

-----처리합니다.
- ⑥-----

-----합니다.
- ⑦ -----

-----처리
합니다.

경어체로
변경

모두 확인
→ 확인

단말기
정보추가

경어체로 변
경

경어체로
변경

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한다.

⑧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상호저축은행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제13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상호저축은행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상호저축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녹취, 전화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으로 출금동의를 받는 방법
- 2. (생 략)

②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상호저축은행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 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 영업일까지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거래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2. ~ 5. (생 략)
- 6.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이외에 상호저축은행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

-----처리합니다.

⑧

-----처리합니다.

제13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

-----합니다.

- 1. -----
--(공인전자서명 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기타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
- 2. (현행과 동일)

② -----

-----있습니다.

③-----

-----있습니다.

제14조(거래의 제한)① -----

-----있습니다.

1. -----

-----따릅니다.

- 2. ~ 5. (현행과 동일)
- 6.-----

저축은행이
정한
기타전자서
명이 있는
전자문서
추가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니할 때,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생 략)

나.휴대폰 문자 통지로 이체거래 결과
를 받기로 한 경우

다. (생 략)

라.점자보안카드 및 보안토큰을 이용하
는 경우

마. (생 략)

7.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
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
적합하다고 상호저축은행이 인정
했을 때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
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2. (생 략)

③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
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
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
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상호저축은
행이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
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의2(지연인출) 1회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현금으로 송금 또는 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내에서 30분간 현금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를 통한 인
출 또는 계좌이체가 지연 될 수 있다.

-----아니합니다.

가. (현행과 동일)

<삭제>

나. (현행과 동일)

다. 점자보안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라.(현행과 동일)

7.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
한,-----

② -----

-----있습니다.

1. ~2. (현행과 동일)

③-----

-----합니다.

④ -----

-----있습니다.

⑤ -----

-----있습니
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제외사유
삭제

다목→
나목

라목→
다목
이동 /
제외사유
수정

마목→
라목

법적지급
제한사유
명확화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제14조의2
→
제14조⑤

제14조의3(인출제한) ①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등 자동화 기기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계좌의 1일 인출한도는 7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인출제한시 이용자는 영업점에 방문하여 본인인증 절차 후 통장 양도 또는 대여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은 다음 인출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① 계좌이체, 추심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 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현금을 수령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 신 설 >

③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긴다.

제16조(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제15조에 의하여 거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서면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신 설>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14조의2(인출제한) ①-----

-----있습니다.

② -----

-----있습니다.

제15조(지급의 효력발생시기)

① -----

-----생깁니다.

② -----
-----생깁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에 지급의 효력이 생깁니다.

④ -----

-----생깁니다.

제16조(거래지시의 철회)①-----

-----있습니다.

② -----

-----있습니다.

③ 지연이체는 이체지연시간 종료 30분 전까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 지급시 효력발생시기 규정

③→④
변경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지연이체

③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상호저축은행이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④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철회된다.

⑤이용자의 사망·한정재산 선고·금치산 선고나 이용자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상호저축은행의 권한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거래내용의 확인)

①상호저축은행은 제15조의 거래의 처리 결과를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 또는 컴퓨터 등 대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즉시 알린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 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

지 전자금융거래 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상호저축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

있습니다.

⑤ -----

지연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 철회됩니다.

⑥-----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한정재산 선고·금치산 선고 포함)-----
-----권한에도 -----
-----합니다.

제17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합니다.-----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지연이체의 경우-----
-----알립니다.

②-----

-----합니다.

③-----

-----합니다.

제18조(오류의 정정)①-----

거래지시 철회조항 신설

제③항→제④항 조문이동

제④항→제⑤항 조문이동

제⑤항→제⑥항 조문이동

민법개정 반영

지연이체 포함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용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상호저축은행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즉시 조사하여 이체자금의 이동경로를 확인하거나 출금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상호저축은행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9조(사고·장애시의 처리)

①이용자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상호저축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상호저축은행이 이를 접수한 후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상호저축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상호저축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 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이용자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

③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상호저축

-----취한 후-----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합니다.

②-----

-----그 원
인과 처리결과를-----합니다.

제19조(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합니다.

②-----
-----생깁니다.

③-----

-----합니다.

④-----
-----불가능한-----
-----이용자가 최종
신고한 연락처-----합
니다.

⑤-----

-----합니다.

제20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상호저축은행은-----
-----받은 후에 제3

오류정정
관련

결과 알림
→원인 및
처리결과를
알림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전자금융처
래가
불가능한
경우
이용자의
최종신고한
연락처로
통지

경어체로
변경

제목변경

은행은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 ① 상호저축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2.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삭제 >

- 1.-----

-----경우(「전자금

제③항→
제①항
조문이동

제①항→
제②항 제③항
조문이동 및
분리

3.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4.상호저축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5.이용자가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 나. (생략)

6.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상호저축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22조(거래기록의 보존) ①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한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②상호저축은행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21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①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용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3.-----

4.----- 제3호에 -----

가. ~ 나. (현행과 동일)

5.-----

제21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합니다.

1. ~ 7. (생략)

②-----

-----합니다.

1. ~ 3. (현행과 동일)

제22조(거래기록·자료의 제공) ①-----

천재지변등
전자금융
거래법상
저축은행
면책사유가
아닌
조항삭제

선불전자
지급수단,
전자화폐는
전자금융
거래법상
양도가능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이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이 전자금융거래 임의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가 이용자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서면통지가 이용자에게 연락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상호저축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이외의 각종 통지를 상호저축은행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상호저축은행에 한 것으로 본다.

-----**최종 연락처**-----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 상호저축은행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③ < 삭제 >

제24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합니다.**

②-----

-----**생깁니다.**

③-----

-----**봅니다.**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개정사항 반영

통지방법 및 절차 변경

도달주의 원칙 강화

일반사항 서면 통지시에만 보통우송기간 경과시 도달 간주

③항 삭제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제25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26조(거래내용 녹음)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비밀보장의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상호저축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책임을 진다.

제28조(약관의 교부 및 설명)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 모사전송(FAX) 또는 우편의 방식으로 본 약관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약관의 내용을 설명한다.

제25조(준수사항)-----

-----합니다.

1. ~ 3. (현행과 동일)

제26조(거래내용 녹음)-----

-----있습니다.

제27조(비밀보장의무) ①-----

-----아니됩니다.

②-----

-----집니다.

제28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약관
명시 의무
신설

이용자
이용내용설
명요청시
직접설명
혹은
전자적장치로

제29조(약관의 변경)

① 상호저축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을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제1항의 게시 외에 상호저축은행은 서면·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함)를 받은 날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9조(약관의 변경)

① -----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상호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

습게표시 및 인지한 의사표시수령

약관 변경내용 유불리 관계 없이 통지의무 부과
이의제기시 적극적 대응의무 신설

약관긴급개정시 통지방법 제②항으로 분리

통지문구 변경

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자의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상호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상호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한다.

제31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 또는 상호저축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상호저축은행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이용자는 제20조 제1항에 정한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

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⑤< 삭제 >

제30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적용합니다.

②-----

-----따릅니다.

③-----

-----적용합니다.

제31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한국소비자
원-----
-----있습니다.
다.

②-----

-----합니다.

③-----

-----합니다.

④-----제2항-----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법인명칭
변경반영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약관
손해배상책

<p>와 관련한 상호저축은행의 사전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p> <p><신 설 ></p>	<p>-----사고조사----- -----합니다.</p> <p>제32조(착오송금에 대한 협조의무) 이용자가 송금금액, 수취은행, 수취인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송금(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하였음을 상호저축은행에게 통지하는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p> <p>1.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동일한 경우 즉시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 반환의무 등을 알리고,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p> <p>2. 송금은행과 수취은행이 다른 경우 수취은행에게 즉시 착오송금임을 알리고, 수취은행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송금인에게 알려야 합니다.</p>	<p>임조항변경 사항 변경</p> <p>착오송금협조의무 신설</p>
<p>제32조(준거법 및 합의관할)</p> <p>①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p> <p>② 이 계약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의 거래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p>	<p>제33조(준거법 및 합의관할)</p> <p>----- -----합니다.</p> <p>----- ----- ----- -----합니다.</p>	<p>제32조 →제33조 (조항 변경)</p> <p>경어체로 변경</p>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안)】

현 행	개 정(안)	비 고
<p>제1조(목적) 이 약관은 상호저축은행과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전자 금융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합니다.</p>	<p>경어체로 변경</p>

<p>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이용자번호"라 함은 숫자(텔레뱅킹에 한함), 영문 또는 숫자와 영문을 혼용하여 이용자가 상호저축은행에 신청한 고유번호(ID)를 말한다.</p> <p>2."이용자비밀번호"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본인여부 및 의사확인을 위해 이용되는 비밀번호이며,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p> <p>3."보안매체"라 함은 상호저축은행이 서비스 계약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서비스 이용시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이하 "OTP"라 한다.)" 등을 말한다.</p> <p>4."공인인증서"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p> <p><신 설 ></p> <p>< 신 설 ></p> <p>< 신 설 ></p>	<p>제2조 (용어의 정의) -----</p> <p>-----</p> <p>-----같습니다.</p> <p>1.-----</p> <p>-----</p> <p>-----말합니다.</p> <p>2.-----</p> <p>-----</p> <p>-----</p> <p>-----말합니다.</p> <p>3.-----</p> <p>-----</p> <p>-----</p> <p>-----</p> <p>-----말합니다.</p> <p>4.<u>전자인증서라 함은 공인인증기관 또는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로 이용자가 컴퓨터(PC)나 플로피디스크 또는 IC카드에 저장하여 인터넷뱅킹서비스 접속 또는 계좌이체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합니다.</u></p> <p>5."<u>생체인증</u>" 이라 함은 이용자가 본인의 전자적 장치에 미리 저장해 둔 이용자의 생체정보(생체에서 발생하는 홍채, 지문, 음성, 정맥 등의 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시 인증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을 말합니다.</p> <p>6."<u>전자적 장치</u>"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p> <p>7."<u>모바일뱅킹</u>"이란 휴대용 전자적 장치(스마트폰, 태블릿PC등 모바일기</p>	<p>경어체로 변경</p> <p>경어체로 변경</p> <p>경어체로 변경</p> <p>공인인증서 필수 사용의무 폐지</p> <p>생체인증 용어 정의</p> <p>전자적장치 용어 정의</p> <p>모바일 뱅킹 용어 정의</p>
---	---	---

제10조(계좌이체) ①출금계좌에서의 자금인출은 예금거래기본약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본인의 거래 지시에 따라 지급청구서 등의 제시없이 인출한다.

②출금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이체시점에서 현금화된 예금잔액(대출한도 포함)에 한한다.

③타행이체의 경우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당일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이용자의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한 후 통지된다.

④거래가 완료된 후에는 거래내용을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거래지시의 착오, 오류입력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⑤예약이체는 이체지정일 1회의 실행으로 종료하며, 이체는 자금이 이체지정시간 전까지 예약지정 금액 이상이 있어야 이체가 가능하다.

⑥예약이체의 취소는 이체지정일 전일까지 취소하여야 한다.

⑦여러 건의 예약이체 지정시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1. ~2. (생략)

제10조의2(지연이체 적용 등) ① 지연이체는 이용자가 그 신청을 한 이후부터 제3조 제1항 각 호의 전자적 장치(지연이체 신청 이후에 선택하는 것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치"라 한다)를 통한 모든 계좌이체에 적용된다.

②지연이체의 지급 효력은 거래지시를 하는 때로부터 이용자가 정한 일정시간이 지난 후(이하 "지연이체예정시각"라 한다)에 발생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관련 법령, 전산사정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1. ~ 2. (생략)

③이용자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을

제10조(계좌이체) ①-----

-----인출합니다.

②-----
-----한합니다.

③-----통지됩니다.

④-----부담합니다.

⑤-----가능합니다.

⑥-----합니다.

⑦-----처리됩니다.
1. ~ 2. (현행과 동일)

제11조(지연이체 적용 등) ①-----

-----적용됩니다.

②-----있습니다.
1. ~ 2. (현행과 동일)

③-----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제10조의2
→제11조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경어체로 변경

<p>방문하거나 장치를 이용하여 지연이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연이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야 한다.</p>	<p>----- ----- ----- ----- 방문하여야 합니다.</p>	
<p>④지연이체에정시각 현재 잔액 부족으로 지연이체의 지급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지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지체없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p>	<p>④----- ----- ----- ----- 상실합니다. ----- ----- -----알립니다.</p>	<p>경어체로 변경</p>
<p>⑤이용자는 지연이체에상시각 30분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장치를 통하여 해당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p>	<p>⑤----- ----- ----- ----- 있습니다.</p>	<p>경어체로 변경</p>
<p>제10조의3(지연이체 적용 제외) 제1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이체에 대해서는 지연이체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는 추가적인 보안조치(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조 제17호를 말한다)를 거쳐야 한다. 1. ~ 3. (생략)</p>	<p>제12조(지연이체 적용 제외) --제11조---- ----- ----- ----- ----- 제18호 ----- ----- 합니다. 1. ~ 3. (현행과 동일)</p>	<p>제10조의3→제12조 경어체로 변경</p>
<p>제11조(서비스 제공시간) 상호저축은행은 창구 영업시간 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각각의 서비스는 상호저축은행 사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p>	<p>제13조(서비스 제공시간)----- ----- ----- ----- ----- 있습니다.</p>	<p>제11조→제13조 경어체로 변경</p>
<p>제12조(서비스의 제한) ①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해당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3회 이상 연속하여 잘못된 접근수단을 제시하거나 입력한 경우 2. ~ 4. (생략)</p>	<p>제14조(서비스의 제한) ①----- ----- ----- ----- 있습니다. 1.----- ----- 단, 간편비밀번호 또는 PIN, 생체인증의 경우 5회이상 연속하여 잘못 입력한 경우 2. ~ 4. (현행과 동일)</p>	<p>제12조→제14조 생체인증 및 간편비밀번호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p>
<p>②전항 제1호에 의해 서비스가 제한되는</p>	<p>②-----</p>	<p>경어체로 변경</p>

<p>< 신 설 ></p>	<p>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u>③상호저축저축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u>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p> <p><u>④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u></p>	
<p>< 신 설 ></p> <p>②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등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기타 관련 약관을 적용한다.</p> <p>제18조(합의관할) 이 계약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과 이용자간의 소송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상호저축은행의 거래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p>	<p>⑤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등 관계법령,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기타 관련 약관을 적용합니다.</p> <p>제20조(합의관할)----- ----- ----- ----- ----- -----합 니다.</p>	<p>②항→ ⑤항으로 변경</p> <p>제18조 → 제20조</p> <p>경어체로 변경</p>

시행일자 : 2018년 05월 08일